

#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9월 3일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김정숙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8112호, 2006. 12. 28. 공포·2007. 7. 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보완·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주택임대차보조사업의 입주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중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로 명확히 함. (안 제3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사업실적은?</p> <p>○ 실질적으로 월세보증금이 인상된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?</p> <p>○ 지원한도가 1,000만원인데 전세보증금으로 실효성이 있는가?</p>	<p>○ 2007년도 14건에 1억 3,800만원, 2008년도에 16건 정도임.</p> <p>○ 무이자 용자이나 월세보증금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 용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.</p> <p>○ 체납액이 늘고있는 실정임. 향후 용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.</p>

### 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### 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###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”를 “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주택임대차보조사업 운영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“갓춘 세대”를 “갓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3년이상”을 “3년 이상”으로 한다.

1. 주거 소유 형태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대

제4조 중 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”를 “규칙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입주세대 신청시”를 “입주세대 신청 시”로 하고, “생활상태등”을 “생활상태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1,000만원이하”를 “1천만원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물가상승등”을 “물가상승 등”으로 하며, “매1년 경과시마다”를 “매년 경과 시 마다”로 하고,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구청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시 「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

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.  
제8조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임대기간 도중”을 “임대기간 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동일주택”을 “같은 주택”으로 하고,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에 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제8조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”을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”으로 하며, “기타수입”을 “그 밖에 수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”을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”으로 하며, “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7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”을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 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59호
의결 년월일	2009. 9. 8. (제154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8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8112호, 2006. 12. 28. 공포·2007. 7. 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보완·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주택임대차보조사업의 입주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중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로 명확히 함. (안 제3조)

# 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

##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”를 “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주택임대차보조사업 운영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“갓춘 세대”를 “갓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3년이상”을 “3년 이상”으로 한다.

1. 주거 소유 형태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대

제4조 중 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”를 “규칙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입주세대 신청시”를 “입주세대 신청 시”로 하고, “생활상태등”을 “생활상태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1,000만원이하”를 “1천만원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물가상승등”을 “물가상승 등”으로 하며, “매1년 경과시

마다”를 “매년 경과 시 마다”로 하고,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구청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시 「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.

제8조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임대기간 도중”을 “임대기간 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동일주택”을 “같은 주택”으로 하고,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에 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제8조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”을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”으로 하며, “기타수입”을 “그 밖에 수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”을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”으로 하며, “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7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”을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”으로  
한다.

제16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주택 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</b>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기금을 조성한다.</p> <p>제3조(입주대상) 입주세대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세대를 그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세대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주민등록표상 부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부천시 관내를 생활근거로 하는 세대</p> <p>제4조(입주신청) 임대주택에 입주 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할 동장 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한 다.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입주세대 선정) ① 구청장은 입주세대 신청시 세대의 생활상 태등을 조사하여 구기금관리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세 대를 선정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<b>부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주택임대차보조사업 운영관리 조례</b>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----- 범위에서-----.</p> <p>제3조(입주대상)----- 각 호----- 갖춘 기초생활보장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 -----.</p> <p>1. 주거 소유 형태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대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3년 이상 -----</p> <p>제4조(입주신청) ----- . -----규칙에 따라 -----.</p> <p>제5조(입주세대 선정) ① ----- 입주세대 신청 시 ----- 생활상 태 등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구청장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</p> <p>제7조(임대계약 및 임대보증금)</p> <p>① 임대보증금은 세대당 <u>1,000만원 이하</u>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<u>물가상승 등</u> 경제적인 여건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대일로부터 <u>매1년 경과시마다 1할의 범위내에서</u>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입주세대가 원할 <u>경우</u>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한</u>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.</p> <p>⑤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시 <u>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</u> 정한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.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8조(임대해지) 구청장은 다음 <u>각 호의 1에</u>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를 해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③ -----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임대계약 및 임대보증금)</p> <p>① ----- <u>1천만원 이하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물가상승 등</u>----- ----- -----<u>매년</u> <u>경과 시 마다</u>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----- .</p> <p>④ ----- <u>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<u>제2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<u>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임대해지)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임대기간 도중에 거주지를 변경하는 세대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기타 구청장이 임대중지의 사유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</p> <p>제9조(임주기간) 임대주택의 임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임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임대주택의 명도)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의거 임대를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세대에 대하여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주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, 입주세대는 지정한 기일까지 당해 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세입·세출)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주택임대차 보조사업 기금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,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</p> <p>②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주택임대차 보조사업 기금의 세출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으로 한다.</p>	<p>1. 임대기간 중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그 밖에 ----- 인정하는 -----</p> <p>제9조(임주기간) ----- 같은 주택 ----- 한차례에 한정하여 -----.</p> <p>제10조(임대주택의 명도) ----- 제8조에 따라 ----- 해당 -----.</p> <p>제13조(세입·세출)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----- 그 밖에 수입-----.</p> <p>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----- 제7조제2항에 따른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4조(예비비)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<u>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</u> 주택 임대차 보조사업 기금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4조(예비비)----- ----- --<u>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6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</u> <u>에</u> ----- -----.</p>

## <관계법령발췌서>

###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5조(자활급여) ①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
  2.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
  3. 취업알선등 정보의 제공
  4.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
  5.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
- 5의2.** 창업교육, 기능훈련 및 기술·경영지도 등 창업지원
- 5의3.**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
6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

### 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17조<자금의 대여 등> ①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.

1.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
  2.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
 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-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은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한다.
- ③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자의 자금 대여규모, 사용계획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딧 방식(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·훈련·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)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.
- ④보장기관은 자금을 대여 받은 수급자가 대여 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.
- ⑤자금의 대여신청, 대상자의 선정 및 대여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